
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

2023. 11. 2.



교 육 부
교 육 자 치 협 력 안 전 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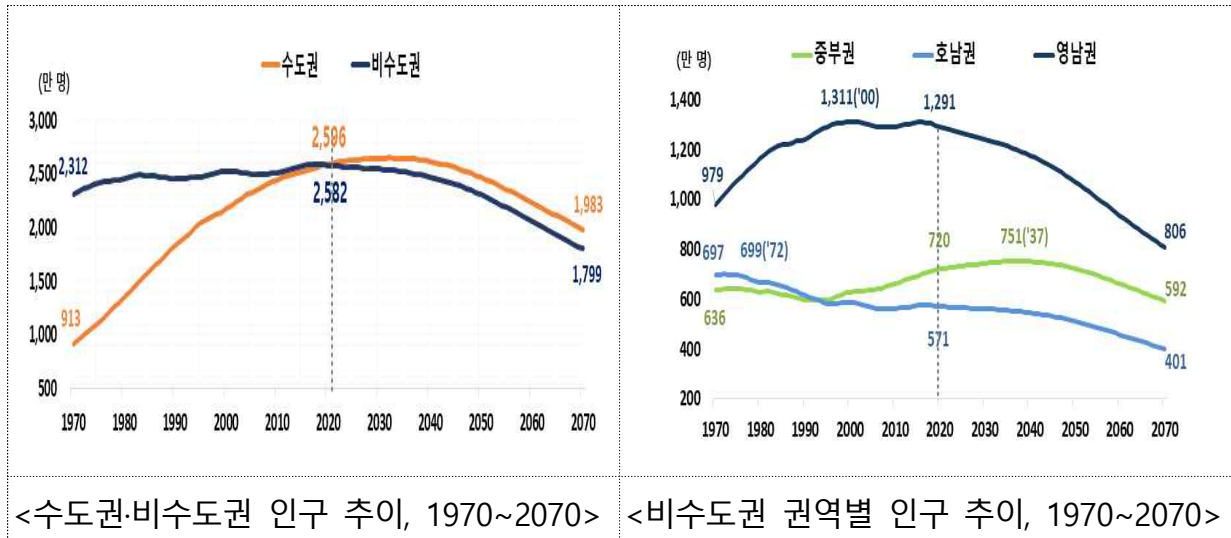
목 차

I. 추진 배경.....	1
II. 교육발전특구 주요 내용.....	2
III. 교육발전특구 운영.....	5
IV. 시범지역 선정.....	8
V. 향후 추진 일정.....	9

I. 추진 배경

□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 우려

※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수도권 인구 대비 비수도권 인구의 감소세 지속



⇒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의 교육 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추구

※ '23년 대통령 신년사 : “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.”
“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.”

□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로 추진할 때 지역의 교육 및 정주 여건 미비로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운 상황

⇒ 지방정부 발전전략과 지역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제공

⇒ 지역의 교육·문화·거주 기반을 개선하여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정주 체제 조성

☞ 지자체, 교육청, 대학, 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**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**하고 지역 **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**하는 **교육발전특구**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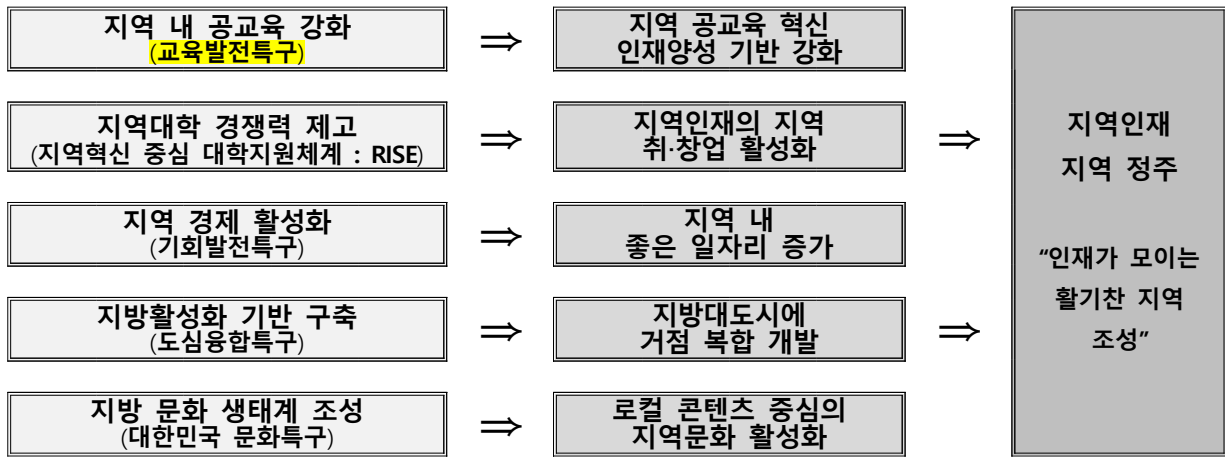
II. 교육발전특구 주요 내용

1 목적

-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

<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체계 >

※ 지역 4대 특구 : 교육발전특구, 기회발전특구, 도심융합특구, 대한민국 문화특구



2 개요

- (개념) 지자체, 교육청, 대학, 지역 기업,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
- (지정 단위)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,3유형으로 운영
 -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단위 결정
 -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(기초)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 참여도 가능

유형	신청 단위	신청 주체
1유형	기초지자체	기초지자체장-교육감
2유형	광역지자체	광역지자체장-교육감
3유형	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	

- (지정 지역) 수도권이 아닌 지역

※ 다만,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선정 가능(「지방분권균형발전법」 제24조 준용)

- (적용 특례)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

3

주요 정책 방향

- (지역인재 생태계 조성)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·창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지원
- (공교육 경쟁력 제고) 공교육 틀 내에서의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 자율성 확대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역량 강화
- (지자체의 지원 확대) 지자체의 지원 및 교육정책 지역 권한 강화 등 특구 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책무성 강화
- (규제 합리화)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 완화 및 특례 지원

<<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 >>

핵심 전략	지역 주도	▷ 지역 주체들이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확산할 수 있는 체계 구축
	공교육 혁신	▷ 지역의 학생, 학부모, 교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교육 혁신 방안 도출 및 시행
	유기적 연계	▷ 유아-초중등-고등교육의 전 과정에 걸쳐 지자체-교육청-지역산업간 긴밀한 연계 하에 정책 시행
	지역 책무성	▷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특구를 지원하되 명확한 성과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책무성 확보

기본 방향

-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△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| △ 공교육 경쟁력 제고 |
| △ 지자체 지원 확대 | △ 규제 합리화 |

I 교육발전특구 선순환 체계(안) I

	유아·돌봄	초·중·고	대학
목표	·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	· 지역 주도 교육개혁 지원 ·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	· 지역인재 유출 방지
추진 방향	· 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 · 유보통합 시범운영	· 공교육 경쟁력 제고 · 디지털기반 수업 혁신	· 고교-대학-지역 연계 강화 · 지역 인재 선발·양성
성과 지표	· 출산율 상승	· 학업성취도 상승 · 사교육비 감소	·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 ·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

- (유아·돌봄 분야)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
 - (맞춤형 유아교육돌봄)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모델 발굴·확산
 - (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) 지자체·교육청 협력 방과후·늘봄지원 센터 운영 등 돌봄에 대한 지역 단위의 책임과 역할 강화
- (초·중·고 분야) 지역 주도 교육개혁 지원,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
 - (지역 공교육 강화)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·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·재정적 지원
 - (학교교육 혁신)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좋은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전체의 공교육 내실화
 - (학생 성장 지원) 학업, 진학, 과학기술교육, 직업교육, 예체능교육, 최신 분야 학습 등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성장을 종합 지원
- 고등교육 분야 : 지역인재 유출 방지
 - (지역인재 입학 전형 확대)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와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
 - (지역교육 중심 역할 수행)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혁신을 통해 대학이 지역교육 및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

Ⅲ. 교육발전특구 운영

1 지역 맞춤형 특례 및 지원 방안 마련

- (상향식 지역교육 발전전략 마련)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
- (타 특구와 연계) 지방시대 4대특구, RISE, 교육국제화특구 등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
- (교육개혁과제 우선지원) 교육개혁* 과제와 연계를 통해 지역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중점
 - * 늘봄학교, 유보통합, 교육의 디지털전환, 학교시설복합화 등
- (재정 지원) 기존 정책사업 연계 및 특교·균특회계 등을 통한 지원

<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(예시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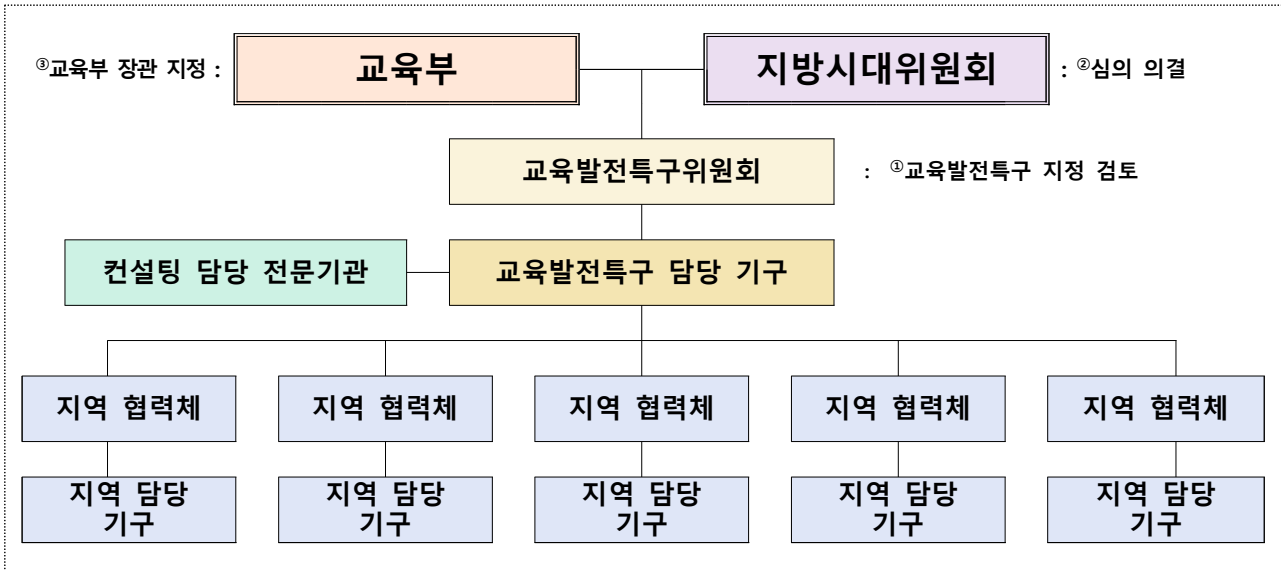
중점 추진 분야	주요 추진 내용(예시)
지역 중심 돌봄·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지자체의 참여와 지원 확대 ▶거점형 돌봄센터, 교통 서비스 구축 등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돌봄 체계 구축 ▶지역의 책임교육·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▶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및 학력 격차 완화 지원 ▶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 특례 운영 ▶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
지역산업 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고교-대학-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개선 ▶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강화 ▶지역 산업의 특색에 맞는 인재양성 방안 수립 ▶지역 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 마련 ▶대학의 인적 물적 핵심역량 지역 환원 ▶국가산단·기회발전특구 등 지역 산업전략과 교육정책 연계
혁신도시 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▶혁신도시-지역 교육기관 간 연계클러스터 운영 ▶개방형 연구실, 오픈캠퍼스 등 공공기관-대학 연계 강화 ▶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 확대 ▶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

○ (특례 적용) 지역별로 마련된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추진

※ 유아부터 대학교육까지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, 특구 지정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관심분야 중심으로 영역별 특화된 모델을 정하고, 이를 추진하기 위한 특례 중심으로 적용 가능

< 교육단계별 교육발전특구 적용 특례(안) >

단계	제 목	내 용
유아 돌봄	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	▷ 지자체·교육청 협력 돌봄 시스템 선도 모델 지원
	맞춤형 유아교육 활성화	▷ 교육과정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변경·운영 ▷ 지역 맞춤 방과 후 과정 운영
초 중 고	학교,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	▷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학교 운영 지원 ▷ 특구 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강화 ▷ 지역인재 선발 등 다양한 학생 선발방식 운영
	교육행정 혁신	▷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직원 추가 배치 ▷ 개방형 교장 공모제 시행 확대 ▷ 지역 산업체, 공공기관 임직원 등 강사 임용 ▷ 교원 탄력전보제, 지역교원제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인사제도 운영 ▷ 지역 수요 맞춤형 교원 양성·연수 강화
	교육개혁 과제 우선 지원	▷ 디지털 교육혁신, 늘봄학교, 학교시설복합화 등 교육 개혁과제 우선 지원
고교 대학 연계	지역인재 전형 확대	▷ 특구 소재 대학의 지역 거주자 입학 기회 부여 확대
	대학 지역교육 중심 역할 수행	▷ 대학교원의 지역 초중고 수업 협력 등 지역 교육기관 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계 강화 ▷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대학 후학습 및 취업 지원
대 학	지역 지원 강화	▷ 지역산업 전략과 연계한 인력양성,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지자체-대학-지역산업 연계 강화 ▷ 지역대학 운영 및 구조개혁을 위한 지자체 차원 투자 및 행정적 지원 강화 ▷ 학교-교육청 선정 지역연계 장학제도 운영



- (교육발전특구 지정)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**교육부 장관이 지정**
 - (교육발전특구위원회) 교육발전특구 지정·운영 및 평가 검토
 - ※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분야별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
 - (교육발전특구 담당 기구) 교육발전특구의 추진 전략 개발과 효율적 관리, 지역별 특성화 및 지속적 규제개선 등을 수행
 - ※ 교육부 내 담당 조직을 설치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및 관계 부처, 시도지사 협의회, 시도교육감협의회, 대교협 등과 긴밀한 협력 추진
- (지역 협력체) 지역별, 유형별 교육발전특구의 운영·관리를 위해 **유관기관 협력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,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**
 - ※ 특구를 신청한 광역(기초)지자체장-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지역별,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특구 운영방안 심의(기초지자체 단위 지정 시 해당 기초 지자체장 참여 필수)
 - ※ 지방시대 4대 특구 및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 간 원활한 연계·협력을 위해 유사 협력체 조직과 지역위원회 통합 운영 가능
- (지역담당 기구) 광역(기초)지자체, 교육청, 공공기관, 기업, 대학 등과 협조하여 **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기획·운영**
 - ※ 담당 기구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 내 설치
- (행정 지원) 전문기관을 통한 **지역별 이행계획 및 성과 창출 컨설팅**

Ⅳ. 시범지역 선정

1 시범지역 선정 개요

○ (신청단위)

유형	신청 단위	신청 주체
1유형	기초지자체	기초지자체장-교육감
2유형	광역지자체	광역지자체장-교육감
3유형	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	

※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(기초)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 참여 가능

○ (지정 지역) 수도권이 아닌 지역

※ 다만,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선정 가능(「지방분권균형발전법」 제24조 준용)

○ (지정규모) 시범지역 지정 규모(개수)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,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

○ (운영 기간) 3년

-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 결정

※ 시범지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우선적으로 정식 지정 검토

2 시범지역 신청

○ (신청방법)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(기초)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'교육발전특구 협약안'과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범지역 공모 신청기한 내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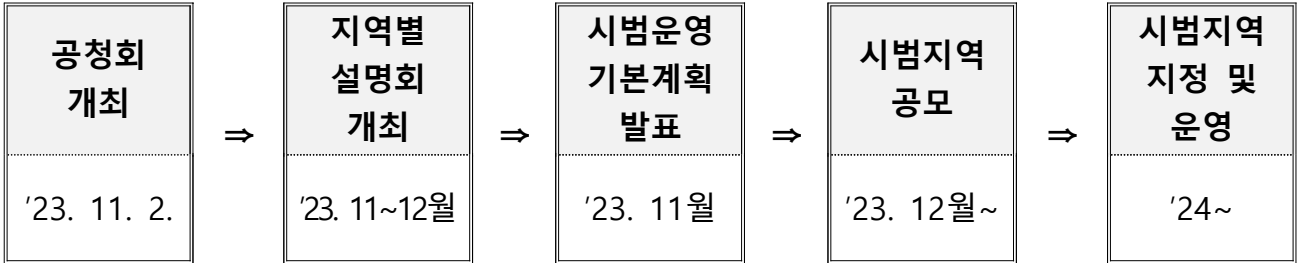
※ 신청 전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(기초)지자체, 교육청, 이전 공공기관, 기업, 대학 등이 함께 지역협력체 구성 필수

○ (신청내용) 교육 전 분야에 대한 지역 차원의 발전전략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 제안

※ 시범지역 선정 이후 특구별 구체적인 규제 개선(안) 및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컨설팅 실시 예정

V. 추진 일정

< 교육발전특구 지정·운영 관련 주요 일정표 >



-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공청회 개최(11.2.)
 - ※ 지방시대 엑스포(11.1~3.) 행사와 연계하여 교육발전특구 공청회 개최
 -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, 시·군·구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
-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지역별 설명회 추진(11월~12월)
 - ※ 시안 발표 후 전국 지자체를 방문하는 순회 설명회 개최 예정
-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 계획 발표(11월)
-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('23.12월~)
-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및 운영('24.~)